



“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” 구현

건강(장기요양)보험료 환급 신청 안내



사업장관리번호 : 92022077171
대표자 : 박원순

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녹색에
사업장 명 : 지과(임용후보자 실무수습)
단위사업장 명 : NONE

-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 - 귀 사업장에서 납부하신 보험료 중 아래와 같이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이 발생되었음을 안내하오니 해당지사로 환급금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보험료환급금은 체납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잔액을 지급하며, **자격유지 사업장**은 익월 보험료 산정 전(매월 15일경)까지 미 신청시, 익월 보험료에 대체됩니다.
- 신청방법 : 우편, 팩스(FAX : 02-3275-8347), 방문
 - 신청구비서류 (신청서 하단 개인(고유식별)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확인 요망)
 - ▶ 신청서류(공통) :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지급신청서, 정산지불이행서 *공동대표자는 대표자 모두의 동의 필요
 - ▶ 탈퇴(자격상실)사업장 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채권양도양수서, 대표선임 근거서류 등
 - 지급방법 : 금융계좌입금(사업장 또는 법인통장에 한함) ○ 문 의 : ☎ 1577-1000
- ※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의하여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하므로, 반드시 기한 내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. 시효완성일까지 청구하지 않는 경우,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청구권 소멸로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▶ [건강·장기요양보험료] 환급금 내역 ◀

구분	환급발생일자	환급발생금액	납부대체액	지급예정금액	발생사유
건강보험료	2020.05.15	40,340	0	40,340	고지반환
(이자)	2020.05.15	70	0	70	
장기요양보험료	2020.05.15	4,140	0	4,140	고지반환
(이자)	2020.05.15	0	0	0	
계		44,550	0	44,550	

▶ 환급금 지급신청서 ◀

금융기관명(은행명)	계좌번호	예금주	전화번호

▶ 정산지불이행서 ◀

상기 본인은 아래의 개인(고유식별)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 보험료등 환급액에 대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정산 지급할 것을 서약하며 건강(요양)보험료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 년 9 월 8 일

- 환급금수령액 : 44,550
- 주민등록(법인)번호 : 65029-1*****
- 사용자명 : 서정철

(인) * 법인 사업장 법인인감 날인

※ [개인(고유식별)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안내]

- 수집 및 이용목적 : 건강(장기요양)보험료 환급금의 지급
 - 수집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장관리번호, 계좌번호, 전화번호 등
 - *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.
 - 보유 및 이용기간 : 준영구
 - 신청고객은 개인(고유식별)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, 이 경우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을 확인합니다. 확인

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
(직인생략)